



제 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OTT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 자체 확인 >

- 강유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091호)
-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698호)

2024.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1. 강유정의원안

가. 발 의 자: 강유정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2024. 6. 3.

다. 회 부 일: 2024. 6. 11.

2. 김승수의원안

가. 발 의 자: 김승수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2024. 6. 20.

다. 회 부 일: 2024. 6.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강유정의원안

지난 22년 9월 본 법률 개정에 따라, 2023년 3월부터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도가 도입되었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Over The Top)를 통하여 제공되는 영상물의 등급분류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었음.

그러나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선전물의 유해성 확인에 관한 업무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그대로 수행하고 있어, OTT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빠르게 마치더라도, 온라인비디오물 배포에 앞서 진행되어야 하는 광고·선전물의 특성상 심의 지연으로 인하여 배포·게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본 영상물의 이용 역시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선전물의 유해성 여부 확인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그 절차와 기준에 대하여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자체등급분류제도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제66조의3 신설 등).

2. 김승수의원안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한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로 봄.

그러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었더라도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이를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는데,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선전물의 유해성 확인

절차가 지연되어 온라인비디오물이 원활하게 유통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확인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비디오물의 공급과정을 효율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4, 제66조, 제66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요지

두 개정안은 모두 자체등급분류가 가능한 온라인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에 대하여 그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자체 확인의 적정성 통제 수단 등 일부 내용 및 형식에 있어 다소 간의 차이가 있음.

[개정안 조문대비표]

[illegible]

현행	강유정의원안	김승수의원안
3. ~ 5. (생략) 제50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5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생략) ② ~ ⑤ (생략) 제66조(광고·선전의 제한 등) ① 비디오물(제5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비디오물은 제외한다)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제50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①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제66조의3제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u>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6조(광고·선전의 제한 등) (현행과 같음)	<u>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u> 3. ~ 5. (현행과 같음) 제50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현행과 같음) 제66조(광고·선전의 제한 등) ① ----- ----- ----- ----- -----

현행	강유정의원안	김승수의원안
배포·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u>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u>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선전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유해성 여부의 확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제66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광고·선전물 청소년 유해성 확인) ① 제6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온라인비디오물(제50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비디오물로 한정한다)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이를 정	----- ----- ----- ----- <u>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제66조의2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u>----- -----. -----.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u>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확인기준 및 절차에</u>---- -----. 제66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유해성 확인 등)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하거나 할 예정인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선전물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

현행	강유정의원안	김승수의원안
	<u>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광고·선전물에 대하여는 제6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 확인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u>소년 유해성 여부가 확인된 광고·선전물이 배포·게시되거나 시청에 제공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확인 결과와 해당 광고·선전물의 세부사항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u>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6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유해성 확인의 대상이 되는 광고·선전물의 내용이 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광고·선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66조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한 청소년 유해성 여부 확인의 효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후에 발생한다.

현행	강유정의원안	김승수의원안
<신설>	제66조의3(영상물등급위원회)의 광고·선전물 청소년 유해성 여부 재확인 등)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 등급분류사업자가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제66조의2제3항의 기준에 위배되거나 자체 등급분류사업자간의 유해성 여부 확인 결과가 상이한 경우 직권으로 광고·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확인 결과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	강유정의원안	김승수의원안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검토의견

OTT 등을 통해 제공되는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하여 각 플랫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제도’가 2022. 9. 27. 법률 개정으로 도입되어 2023. 3. 28.부터 시행되고 있음.¹⁾

그러나 현행법 제66조²⁾에 따르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하더라도

-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①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는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그 온라인비디오물의 제공 전에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하여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을 공급하는 자가 그 비디오물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갖추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요청하여 그 결과로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대체할 수 있다.
-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광고·선전의 제한 등) ①비디오물(제5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비디오물은 제외한다)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선전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나 선전물은 이를 배포·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나 선전물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을 제외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그 광고선전물의 내용이 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의 내용 또는 등급과 다른 내용이나 등급을 표시한 광고·

청소년관람불가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선전물’³⁾을 배포·게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본편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와 별도로 여전히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해당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⁴⁾

그에 따라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본편에 앞서 배포·게시 등이 필요한 광고·선전물의 유해성 확인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본편의 신속한 유통에 지장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연도별 비디오물* 광고·선전물 청소년 유해성 여부 확인 현황]

(단위: 건)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3,464	4,627	8,455	8,963	9,426
유해성 없음	3,141	4,125	7,628	8,458	8,677
유해성 있음**	323	502	827	505	749

* 일반 비디오물 및 온라인비디오물 합산

** 음주, 흡연, 과도한 신체노출, 마약 흡입, 유사 성행위, 폭력적인 장면 등 포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참고로,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에 따른 청소년 유해성 여부 확인 처리기한은 7일이나, 실제로는 2019~2022년 평균 1일, 2023년 평균 1.6일이 소요되었다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임.

선전물을 배포·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자는 그 광고 또는 선전물을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게시물이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밖에서 보이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1항에 따른 유해성 여부의 확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3) 간판, 포스터, 잡지, 온라인 광고물 등, 본편의 홍보를 위해 제작되는 광고·선전물을 의미함.

4) 영화나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분류 제도와 달리 광고는 그 매체의 특성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동을 포함한 전체연령층이 보아도 무방한 수준인지 등을 기준으로 청소년 유해성 여부만을 결정함.

이에 개정안은 자체등급분류 대상 온라인비디오물의 경우 그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자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온라인비디오물의 신속하고 원활한 유통을 도모한다는 자체등급분류제도의 도입 목적을 고려할 때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아울러, 강유정의원안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유해성 확인 결과를 점검하여 필요시 직권으로 이를 재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안 제66조의3), 김승수의원안은 광고·선전물의 배포·게시 등 전에 자체 확인 결과와 세부 사항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그 통보가 있어야 유해성 확인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는 등(안 제66조의2제3항·제4항), 두 개정안 모두 청소년 유해성 여부 자체 확인의 적절성에 대한 통제수단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현행법 제50조의5제1항⁵⁾에 따르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은 ‘해당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범위’에서만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나,⁶⁾ 개정안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유해성 여부를 자체 확인하는 광고·선전물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자체등급분류의 효력) ①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비디오물은 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공급 및 제공하는 범위에서 제50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6) 이는 온라인비디오물과 유사한 자체등급분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게임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은 그 유통 범위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모든 사람이 통행 가능한 공공장소나 여타 정보통신망 등에서 공공연하게 배포·게시 또는 제공될 수 있으므로 그 영향력이 더욱 크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⁷⁾

이와 관련하여 지난 제21대 국회⁸⁾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의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엄격히 보호하여야 한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금지 규정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업자의 자율규제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으므로, 개정안 심사 시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한편, 개정안과 같이 광고·선전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

7) 다만,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오프라인 광고물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고, 온라인 광고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 관련 규제 및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등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라 온라인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유해 광고·선전물이 공공연하게 유통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임.

8) 당시 이상헌의원안(의안번호 제2118008호)에 대한 의견으로,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견없음.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첫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유해성 자체 확인에 대한 통제와 관련하여서는 두 개정안이 각각 다른 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먼저, 강유정의원안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자체 확인 결과를 점검하여 필요시 직권으로 이를 재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안 제66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재확인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50조의6제1항제3호의2).

한편, 김승수의원안은 광고·선전물의 배포·게시 등 이전에 자체 확인 결과와 세부 사항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그 통보가 있어야 유해성 확인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안 제66조의2제3항·제4항), 이를 통보하지 않거나 청소년 유해성 확인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권고¹⁰⁾ 및 지정취소·업무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50조의4).

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5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0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제50조의7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4.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계속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앞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시정방안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행법 제50조의7¹¹⁾은 ‘본편’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분류한 등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새로 하거나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광고·선전물’의 경우에도 강유정의원안과 같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직권으로 유해성 여부를 재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 판단이 부적절하더라도 광고·선전물의 특성상 이미 배포·게시된 이후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이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김승수의원안과 같이 광고·선전물의 배포·게시 전에 유해성 확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면서 시정권고 등의 수단으로 이를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므로, 심사 시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¹²⁾

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7(직권등급재분류 등)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이 제5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새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과가 등급분류 기준에 현저히 위배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의 등급분류 결과가 상이한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 또는 취소 결정을 한 경우 이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요구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참고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광고·선전물 배포 전 통보는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의 긍정적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둘째, 강유정의원안 제66조의2제2항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유해성 자체 확인에 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유해성 확인에 관한 현행법 제66조제3항¹³⁾을 준용함으로써 광고·선전물이 ‘제한관람가’(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이를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 제50조의2제1항¹⁴⁾ 단서는 본편이 제한관람가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니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등급을 분류¹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강유정의원안과 같이 현행법 제66조제3항을 그대로 준용하기보다는 김승수의원안 제66조의2제3항과 같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유해성 확인 과정에서 광고·선전물이 제한관람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유해성 여부 및 제한관람가 해당 여부를 확인¹⁶⁾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광고·선전의 제한 등)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나 선전물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을 제외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그 광고선전물의 내용이 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①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는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그 온라인비디오물의 제공 전에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15) 비디오물이 제한관람가 등급으로 분류될 경우 현행법 제53조의2에 따라 제한관람가비디오물 소극장 외에서는 시청제공 및 유통이 금지됨.

16) 광고·선전물이 제한관람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현행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일반적인 배포·게시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청소년을 제외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것도 금지됨.

셋째, 강유정의원안 제66조의2제1항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가 가능한 본편이 ‘청소년 관람불가’(제50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자체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정하고 있으나, 본편에 앞서 유통이 필요한 광고·선전물의 특성상 본편이 ‘등급미정’인 상태에서도 그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이 먼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김승수의원안과 같이 이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문 의 처
02)6788-5376